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1가합405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박정혁, 양선화, 문옥

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조의정

변론 종결2022. 8. 23.

판결 선고2022. 10. 1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D(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1,023,634원을 93,419,8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7,151,304원을 1,099,410,96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주방기구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스텐레스 제품 판매업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3) B은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사내이사로, E 및 F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자이다.
- 4) 피고는 아래 라.항과 같이 B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자이다.

나. 원고와 E, F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 1) 원고는 E와의 사이에, 2016. 3. 30.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6. 3. 30.부터 2017. 3. 29.까지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1), E는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았다.
- 2) 원고는 E와의 사이에, 2017. 6. 15. 보증금액 2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17. 6. 15.부터 2022. 6. 14.까지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는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7. 7. 3. G으로부터 일반운전자금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F와의 사이에, 2019. 3. 29. 보증금액 5억 9,500만 원, 보증기간 2019. 3. 29.부터 2020. 3. 27.까지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 F는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9. 4. 1. G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7억 원을 대출받았다.

4)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E가 2020. 9. 1. G에 이자를 연체하여 제1, 2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G의 청구에 따라 2021. 1. 22. 연체된 대출원리금 중 386,554,910원(= 제1 신용보증약정상 원금 2억 7,000만 원과 이자 7,353,692원 합계 277,353,692원 + 제2 신용보증약정상 원금 107,812,507원과 이자 1,388,711원 합계 109,201,2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제3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20. 10. 5. F의 예금부족으로 인한 기업체 당좌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G의 청구에 따라 2021. 2. 16. 연체된 대출원리금 중 608,392,661원(= 원금 5억 9,500만 원 + 이자 13,392,661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G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490,445,373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

3) 원고는 2021. 3. 26. F 및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1차전4702호로 "구상금 606,496,294원 및 그 중 606,495,763원에 대하여는 2021. 2. 1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21. 5.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4) 또한, 원고는 2021. 4. 13. E 및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1차전4940호로 "구상금 386,793,072원 및 그 중 384,554,910원에 대하여는 2021. 1. 2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21. 10.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등기

피고는 2020. 7. 2.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7. 2. 접수 제5607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1) 피고는 2021. 4. 6. 피고의 F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등의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21. 4. 7. 개시결정 및 기입등기가 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G은 F가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2021.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 4. 19. 개시결정이 됨으로써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의 배당이의 등

1)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2. 2. 1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990,354,804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광주시	교부권자(당해세)	1	100%	5,331,170원
G의 승계인 H 유한회사	신청채권자 (2010. 11. 18. 근저당권)	2	100%	1,706,848,696원
원고	근저당권자 (2010. 11. 18. 근저당권 일부이전)	3	100%	477,151,304원
피고	신청채권자 (2020. 7. 2. 근저당권)	4	80.1%	801,023,634원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전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E 및 F의 자금사정 등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1. 22., 2021. 2. 16. 각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며,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B은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바, 피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설정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E,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이미 원고와 E, F, B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라 E, F가 G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G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구상금채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G에 2021. 1. 22. E의 대출원리금을, 2021. 2. 16. F의 대출원리금을 각 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위 기초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E,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합계 1,099,410,964원[= 각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채권액 993,289,366원(= 제1, 2 신용보증약정 386,793,072원 + 제3 신용보증약정 606,496,294원) + 대위변제 잔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105,570,698원(= 20,842,193원3) + 17,665,029원4) + 9,438,071원5) + 57,625,405원6)) + 독촉절차비용 550,900원(= 235,900원 + 3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및 배당 합의에 기하여 실제로 배당받게 된 477,151,304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구상금채권 역시 피보증대출기관인 G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지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G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 중 1,706,848,696원은 G의 승계인 H 유한회사에 배당하고, 나머지 477,151,304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한 점, ②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이전이었으므로 G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③ 또한 G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채무자를 F로 특정하고 있는바, E에 대한 채권의 경우 위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위변제자인 원고가 위 477,151,304원을 초과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내지 1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의 2021. 9. 28.자,

2021. 10. 7.자 사실조회회신,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콘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982,187,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적어도 합계 3,278,186,256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2021. 5. 1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건물의 가액이 2,669,585,0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7. 2. 무렵 위 적극재산의 시가도 위 가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2,669,585,020
2	단양군 J 건물 K호 1/10지분	11,500,000
소계	2,681,085,020	

1	L	2020-06-05	1,000,000
2	M	2020-04-24	8,400,000
3	M	2020-06-05	3,100,000
4	G	2020-02-05	56,405,000
5	G	2020-03-16	37,999,000
6	G	2014-09-25	241,000,000
7	L	2018-12-18	39,611,000
8	N	2019-09-30	15,678,000
9	O	2020-01-16	108,075,000
10	원고 신용보증기금	2019-03-29	982,187,000
11	피고		1,784,731,256
소계	3,278,186,256		

다) B은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도 그와 같은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사내이사로 있는 F는 피고로부터 스텐레스 제품 등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20. 6. 30. 외상대금 및 대금지급을 위해 교부된 어음 중 미결제 금액 등 미수금이 합계 1,784,731,256원에 이르게 되었고, 2020. 7. 2.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2020. 7.부터 같은 해 9.까지 F는 피고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9,786,80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물품 거래 기간은 세 달 남짓이고, 그 거래 횟수는 3회뿐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F가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3회의 물품공급 이후 그 공급을 중단하고 2021.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F의 사업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실상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때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배당받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1,023,634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93,419,83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7,151,304원은 원고의 채권액 1,099,410,96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며,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나머지 85,344,140원(= 피고에 대한 배당 경정액 707,603,800원 - 원고에 대한 배당 경정액 622,259,660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신

판사김재연

판사유재경

별지

1)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매년 1년씩 연장되어 2020. 3. 27. 최종 보증기한이 2021. 3.

26.까지로 변경되었다.

2) 제3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2020. 6. 25. 최종 보증기한이 2021. 6. 25.까지로 변경되었다.

3) 제1, 2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 잔금 386,554,910원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지급명령결정 최후송달일 2021. 9. 24.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6,554,910\text{원} \times 8/100 \times 246/365$, 이하 원 미만 버림)

4) 제1, 2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 잔금 386,554,910원에 대하여 2021. 9. 25.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2. 1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6,554,910\text{원} \times 12/100 \times 139/365$)

5) 제3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 잔금 606,495,763원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지급명령결정 송달일인 2021. 4. 27.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6,495,763\text{원} \times 8/100 \times 71/365$)

6) 제3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 잔금 606,495,763원에 대하여 2021. 4. 28.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2. 1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6,495,763\text{원} \times 12/100 \times 289/365$)